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매크로 이용 무관 이용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15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매크로 이용 무관 이용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 2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4. 10. 8.

3. 회 부 일: 2024. 10. 1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매크로 이용 무관 이용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판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제38조(벌칙)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

	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몰수·추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경범죄 처벌법」[1]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3. 8. 8. 「체육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2024. 2. 9. 시행).[2)]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고, 부정판매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정판매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판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 내용

	현 행 법	개 정 안
금지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제21조의2제2항)	방법 무관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제21조의2제2항)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2항제1호의2)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1항제3호)
		부당이득 몰수·추징 (제39조의2)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권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도 제재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철도사업법」 등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부정판매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표] 암표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금지행위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경기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타인에게 재판매 (제3조제2항제4호)	16만원 이하 벌금 (제3조제2항제4호)
철도 사업법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10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제1항제4호)
평창 올림픽법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제25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2조제1항)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4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제1호)
체육 시설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21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2항제1호의2)
국민체육 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6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다만,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자 처벌규정 시행(2024. 2. 9.)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3].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다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문체부는 현장 암표매매를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암표매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문체부 수정안> 제21조의2제2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table>
<tr><th>구분</th><th>이춘석 의원
(2942)</th><th>강유정 의원
(3804)</th><th>조계원 의원
(4600)</th><th>박수영 의원
(4673)</th><th>민형배 의원
(4785)</th></tr>
<tr><td rowspan="2">금지
행위</td><td>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제2항)</td><td rowspan="2">-</td><td colspan="3">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제2항)</td></tr>
<tr><td>-</td><td>-</td><td>기준가격 변경
(‘구입한 가격’
→‘판매 정가’)
(제6조의2제1항)</td><td>-</td></tr>
<tr><td rowspan="2">처벌</td><td rowspan="2">이득액에 따른
처벌 차등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제2항제1호)
<table><tr><th>부당
이득액</th><th>처벌</th></tr><tr><td>500
만원
이하</td><td>5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500~
1,000
만원
미만</td><td>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1,000
만원
이상</td><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able></td><td rowspan="2">-</td><td colspan="2">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호)</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제51조제4항)</td></tr>
<tr><td>기타</td><td>-</td><td>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의무화
(제6조의2제3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5조제1항제1호)</td><td>-</td><td>‘신고기관’ 지정
(제6조의3)</td><td>부정판매
확인 방법·절차 등
‘부령’ 위임
(제6조의2제3항)</td></tr>
</table>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공연법」 개정안 발의 현황

<table>
<tr><th>이춘석 의원안
(2928)</th><th>강유정 의원안
(3799)</th><th>조계원 의원안
(4576)</th><th>박수영 의원안
(4674)</th></tr>
<tr><td>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td><td>-</td><td colspan="2">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td></tr>
<tr><td>이득액에 따른
처벌 차등</td><td>-</td><td colspan="2">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td><td rowspan="2">-</td><td>기준가격 변경
(‘구입한 가격’
→‘판매 정가’),</td></tr>
<tr><td>‘신고기관’ 지정</td></tr>
</table>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현황

조계원 의원안 (4615)
1.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현황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감시·조치 현황]

(단위: 건, %)

연도	감시 건수			조치 건수			조치율 (B/A)
	신고접수	모니터링	계(A)	예매취소	경고문 발송	합계(B)	
’20년	1,607	4,630	6,237	366	129	495	7.9
’21년	1,423	16,999	18,422	207	473	680	3.7
’22년	7,829	28,994	36,823	151	670	821	2.2
’23년	14,728	37,223	51,915	80	1,214	1,294	2.5
’24년(9월말)	6,798	54,032	60,830	12	1,622	1,634	2.7

* 신고접수: 암표신고 통합사이트에 접수된 신고 건수

** 모니터링: 신고센터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한 암표 의심 사례 건수

*** 예매취소: 실제 예매취소된 건수

**** 직권취소 시 개인 간 거래 규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 이미 개인간 거래가 완료된 건의 경우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경기를 보지 못하는 피해 발생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경고문 발송 시 자진취소 유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방식]

구분	내용
운영인력	3명 (신고접수·모니터링 2명, 기획·홍보 1명)
운영시간	• (신고접수) 온라인 상시 접수 • (모니터링) 09:00-18:00, 연중 무휴, 2인 교대근무
신고대상 경기	프로단체 및 구단 주최·주관 경기 (K리그, KBO, KBL, WKBL, KOVO 정규리그,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
신고대상 사이트	•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티켓베이, 번개장터, 당근 등 • (소셜미디어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신고 플랫폼	공연 및 스포츠 암표신고 통합 사이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업무 절차]

<table>
<tr><th>업무절차</th><th>업무내용</th><th>관리주체</th><th>수행주체</th></tr>
<tr><td>① 신고접수&
모니터링</td><td>- 온라인 신고센터 통해 신고건 접수
- 모니터링 요원이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 티켓베이 • 트위터 등에서 거래되는 암표 확인</td><td colspan="2" rowspan="2">한국프로
스포츠
협회</td></tr>
<tr><td>② 결과공유</td><td>- 일일 신고접수&모니터링 확인
- 좌석 확인 건에 한하여 티켓사에 정보 전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
* 일 1회 15:30 보고 및 전달</td></tr>
<tr><td>③ 좌석확인&
고객정보조회</td><td>- 좌석 확인 티켓 고객예매 정보 조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td><td rowspan="3">한국프로
스포츠
협회</td><td rowspan="3">티켓사
(인터파크,
티켓링크)</td></tr>
<tr><td>④ 경고문 발송</td><td>- 암표 의심 티켓 판매자에 경고문 발송</td></tr>
<tr><td>⑤ 결과 송부</td><td>- 경고문 발송, 확인 불가, 자진 취소 등 처리 결과 전달(티켓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td></tr>
</tabl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